

# 2019년도 제1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I. 추경예산 개요

### 1. 세 입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 7억 7천 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3천만원(20.0%)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기정	당초
<b>합 계</b>		648	648	778	130	130	20.0	20.0
세외수입	경상적	6	6	6	0	0	0	0
	임시적	17	17	17	0	0	0	0
보조금	국고보조금	625	625	755	130	130	20.0	20.0

- 추가경정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비 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b>계</b>	625	625	755	130	130	
국고보조금 등	625	625	755	130	130	

## 2. 세 출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3억 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8억 3백만원 대비 5억 4백만원(7.4%) 증액된 수준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 관리	소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운영경비	158	158	158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6,645	6,645	7,149	504	504	7.4	7.4

○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09	709	1,213	504	504	71.0	71.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	121	331	210	210	173.0	173.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294	50.0	50.0

## II. 검토의견

### 1. 세입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고자 하는 것임.

〈비상기획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주요 세목별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예 산 액					비 고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계	625	625	755	130	130	
국고보조금 등	625	625	755	130	130	

#### 가. 국고보조금 세입 증액 편성

- 국고보조금 세입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6억 2천 5백만원) 대비 20.8%(1억 3천만원) 증가한 7억 5천 5백만원으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사업’ 공모(2019.1.28.)와 선정(2019.4.24.)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고보조금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임.

〈국비지원 공모사업 선정 경위〉

○ 과기부「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공고	: '19. 1. 28.
○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전자고지 사업추진 협의	: '19. 3. 4.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 방침 수립	: '19. 3. 27.
○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1차 합격	: '19. 4. 9.
○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최종 합격	: '19. 4. 24.
○ 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시범사업 협약	: '19. 5.17.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고지 사업예산 추경 추진	: '19. 5월~

## 2. 세출예산

○ 비상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73억 7백만원으로 기정 예산 68억 3백만원 대비 7.4%(5억 4백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도					증감율		
	예산		추경예산	증감				
	당초	기정		당초	기정	당초	기정	
총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관리	소 계	6,803	6,803	7,307	504	504	7.4	7.4
	행정운영경비	158	158	158	0	0	0	0
	재무활동	0	0	0	0	0	0	0
	사업비	6,645	6,645	7,149	504	504	7.4	7.4

○ 주요 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은 당초 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0%(87,984백만원) 증가한 3억 3천 1백만원이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당초 예산(5억 8천 8백만원) 대비 50.0% 증가한 8억 8천 2백만원으로, 2개 사업에 12억 1천 3백만원(71.0%)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추가경정예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19예산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비율	
				당초	기정	당초	기정
합 계	709	709	1,213	504	504	71.0	71.0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121	121	331	210	210	173.0	173.0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294	50.0	50.0

## 가.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억 3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1억 2천 1백만원) 대비 173.1%(2억 1천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개발비’ 통계목을 새로 설치하여 편성하고 있음.

### <민방위 교육훈련 준비 및 행사추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130,000) 331,410	(x-) 121,410	(x130,000) 210,000
사무관리비	(x-) 80,310	(x-) 80,310	(x-)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x-) 8,100	(x-) 8,100	(x-) 0
전산개발비	(x130,000) 210,000	(x-) 0	(x130,000) 210,000
행사실비보상금	(x-) 3,000	(x-) 3,000	(x-)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30,000	(x-) 30,000	(x-) 0

- 본 ‘전산개발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대국민 고지·안내 문의 전자화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2019.4.25.)되어 국비 1억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나,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이 상호출자방식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8천만원을 합하여 2억 1천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하려는 것임.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 정 ( 통계 목 포함 )	비고
200	물건비		
	207 연구개발비	<b>02. 전산개발비</b> 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 -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적용 2. 전산개발에 따른 감리비 - 전자정부법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	

○ 사업 목적은, 현행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송달이 우편 송달 또는 민방위 대장(통장)이 직접 전달함에 따라, 통지서 분실 등에 따른 송달 입증이 곤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바,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능동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통지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참석률 향상을 도모하고 통지서의 법적 도달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추이를 보면, 해마다 교육대상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참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율: 2016년 2.8%→2017년 3.6%→2018년 4.1%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대 상	참 석	참석률	대 상	참 석	참석률	대 상	참 석	참석률
현황	666,488	648,135	97.2	656,498	633,098	96.4	653,454	626,825	95.9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수(23,400명) 대비 자치구의 과태료 부과율은 18.2%(4,267명)에 그치고 있는바, 이는 교육훈련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하는 등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훈련통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교육 참여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2017년 기준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명 / %)

불참자	부과대상	부과금액 (천원)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23,400명	4,267명	423,599천원	2,090명	173,582천원	48.9%

※ 2018년 귀속 과태료는 2019년에 부과되고, 표 실적은 2019년 1월말 기준임.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하여, 본인 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2019.2.14.)함에 따라,
- 비상기획관은 휴대폰번호에 대하여 본인동의 및 수집 없이도, 서울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는 연계정보(CI값)를 활용하여, 휴대전화로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다만,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및 「민방위기본법」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송달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비상기획관은 일괄 전자고지 후 교육대상자에 대한 본인동의 절차 확행 등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제11조(전자적 고지·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통지서 등의 종이 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 ○ 민방위 관련 법령 내 전자통지 및 고지 가능에 대한 근거

####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 ①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본인에게 **교육훈련 통지서를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 또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주문하였는바,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을 매개로 하는 본 통지서 송달방식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발취)〉

#### - 기술성 등 기타 부분 -

- 기술성
  - 개인정보 연계처리 부분 등에 대한 보안검토를 위해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이행 필요
  - 내외부 시스템과 연계시 사전에 필요 항목을 정의하고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연계하여야 함
    - : 외부기관 시스템과의 연계시에는 시스템 간 직접적인 연계가 아닌 별도 연계서버 (또는 중계서버) 를 활용하여야 함
    - : 외부기관과의 통신은 전용회선 또는 VPN 등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거나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한 암호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도입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사전협의(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 :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3년 이상 보관)와 접속기록을 관리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비정형파일 포함)를 DB 등에 저장시 암호화
  -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암호화
  - 웹사이트 오픈 전(15일전) 사전 심의 절차 이행(개인정보보호법 제 31조 ~ 33조)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확인
    - :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이행여부
    - : 개인정보보호 부서책임자, 담당자 명단 제출
    - : 「개인정보보호 보안 점검표」를 작성·제출
  - 상기 보안대책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보안대책 수립·시행
- 기타
  - 정보시스템 구축비 5억원 미만의 비감리 대상사업이나, 시민에게 문자메세지 및 카카오톡을 통해 민방위 안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시스템 완성도 제고와 안정적인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감리사업 진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정보시스템담당관-6842, 2019.5.3.)



## 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8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5억 8천 8백만원) 대비 50.0%(2억 9천 4백만원) 증액된 것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가경정예산 요구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9 예산		추경(안)	당초예산대비	
	당초	기정		증감	증감율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588	588	882	294	50.0

- 본 사업은 「민방위기본법」(제15조(민방위 준비))에 따라 시민의 안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방독면을 확보하여 민방위 사태 대응 능력 강화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이 26.4%(2019.3월 기준)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로 매우 저조한바, 방독면 확충을 위하여 시비 2억 9천 4백만원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자치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자본보조	(x271,656) 882,588	(x271,656) 588,588	(x-) 294,000

※ 산출식: 14,000개 × 42,000원 × 50% (시·구비 50:50 매칭 사업)

〈전국 17개 시도 방독면 확보율 현황〉

상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하위순위	시도명	확보율(%)
1	경 북	111.6	15	대 전	34.5
2	전 남	101.2	16	부 산	27.6
3	충 북	75.5	17	서 울	26.2

※ 전국 광역자치단체 방독면 평균 확보율: 49.9%

※ '19년 추경 예산 반영시 31.7%로 확보율 개선

○ 또한, 비상기획관은 방독면 확보 관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까지 전국 평균 수준인 방독면 확보율 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따라 1만 4천개의 방독면을 추가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금년말 예상 보유율이 31.7%(210,972개)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市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율 개선 5개년 계획(안)〉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확보율	33.1%	37.4%	41.6%	45.8%	50%

〈2019년도 추경 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 현황〉 (단위 : 개, %)

구 분	목표량 (개)	'19년 3월 (현재)		'19년 추경 반영시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시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보유량	보유율
현황	665,596	175,412	26.4	210,972	31.7	201,985	30.3

○ 또한, 매년 방독면 확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대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방독면 확보는 요원해 보이는데,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 방독면 확보에 보다 실천력 있는 계획 수립과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자치구별 방독면 현황〉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보유율 (%)	필요량	보유량 (3월)	보유율 (%)
현황	707,749	117,459	16.6	695,520	135,145	19.4	688,134	153,242	22.3	674,342	173,901	25.8	665,596	175,412	26.4

○ 한편, 국고 보조금 대상 사업 주체별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조금 관련 법령에서는 국고 보조율을, 지방재정법령에서는 자치단체간 지방비 부담 비율을 규정하였으므로, 국고 보조 사업인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의 비용 부담은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은 30%로, 나머지 70%는

시와 자치구에서 각각 반씩(50:50)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임.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보조사업별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의 별표 1)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 보조율을 30%로 규정하면서, 국고 보조율(기준보조율)의 정의를, 해당 회계연도의 보조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등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였음.

※ 「지방재정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에서는 국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을 규칙으로 위임하였고, 규칙\* 별표에서는 ‘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 사업은 시·구의 부담비율을 50:50으로 규정하였음.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 업	기 준 보 조 율 ( % )	비 고
1. 일반여권 발급	100	
2. 119구조장비 확충	50	
<b>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b>	<b>30</b>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이하 생략)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 업 명	특별시·광역시		도	
		시	구	도	시·군
1	민방위 인력 동원	50	50	50	50
2	도서종합개발	30	70	50	50
3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30	70	30	70
4	공립전문대학 운영비 지원	100	0	100	0
5~109번 생략					
110	<b>민방위교육·운영 및 시설·장비보강</b>	<b>50</b>	<b>50</b>	<b>30</b>	<b>70</b>
(이하생략)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

○ 그러나,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기획관은 국비 보조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령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비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비 매칭을 통한 사업추진이 타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비상기획관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매’ 관련 추경을 시비:구비(50:50)만으로 편성.

###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의 경비 부담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 (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22조(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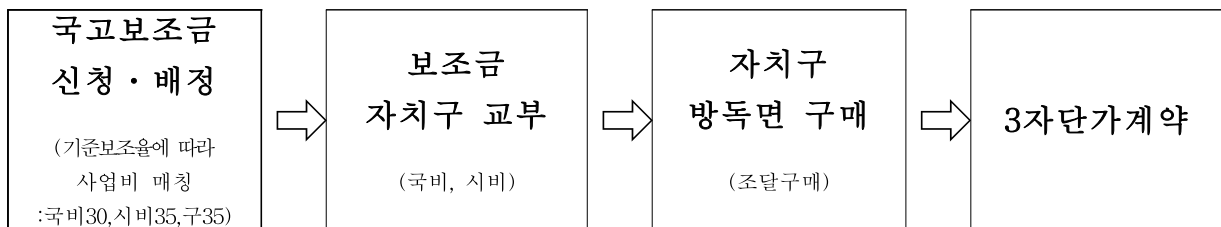
제2조(부담경비의 종목과 비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와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사업별로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의 재정자주도등을 감안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이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방독면 구매방식과 관련하여 자치구마다 개별 구매하는 방식 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매 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자치구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 노력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방독면 구매 절차〉**

- ◆ 자치구에서 교부받은 보조금(국비 30%, 시비 35%)에 구비(35%)를 매칭하여
- ◆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매절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최석훈
------	-----	-------	-----

## 자치구별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보유 현황 등

구 분	목표량 (개)	'19년 3월 (현재)		'19년 추경 반영시		'20년 시효초과 방독면 폐기시	
		보유량 (개)	보유율 (%)	보유량 (개)	보유율 (%)	보유량 (개)	보유율 (%)
<b>합 계</b>	<b>665,596</b>	<b>175,412</b>	<b>26.4</b>	<b>210,972</b>	<b>31.7</b>	<b>201,985</b>	<b>30.3</b>
종 로	8,702	4,956	57.0	5,256	60.4	5,139	59.1
중 구	8,964	3,698	41.3	3,998	44.6	3,998	44.6
용 산	15,496	6,687	43.2	7,317	47.2	7,125	46.0
성 동	21,910	6,105	27.9	6,865	31.3	6,317	28.8
광 진	26,661	6,597	24.7	7,657	28.7	7,254	27.2
동대문	24,266	5,486	22.6	6,876	28.3	5,526	22.8
중 량	30,611	8,056	26.3	9,196	30.0	9,196	30.0
성 북	26,646	7,055	26.5	8,315	31.2	7,459	28.0
강 북	21,455	5,662	26.4	7,112	33.1	6,956	32.4
도 봉	21,083	5,326	25.3	6,806	32.3	6,320	30.0
노 원	31,037	6,313	20.3	8,463	27.3	7,523	24.2
은 평	32,394	7,805	24.1	9,975	30.8	8,926	27.6
서대문	19,005	11,005	57.9	11,705	61.6	11,453	60.3
마 포	26,055	6,664	25.6	7,814	30.0	7,716	29.6
양 천	26,869	9,507	35.4	10,367	38.6	10,367	38.6
강 서	46,421	9,352	20.1	12,502	26.9	12,502	26.9
구 로	29,508	6,624	22.4	7,904	26.8	7,904	26.8
금 천	18,624	5,474	29.4	6,374	34.2	6,374	34.2
영등포	27,572	6,166	22.4	7,496	27.2	6,596	23.9
동 작	28,036	5,759	20.5	7,149	25.5	7,149	25.5
관 악	44,180	9,305	21.1	11,815	26.7	10,862	24.6
서 초	25,270	5,746	22.7	7,776	30.8	7,776	30.8
강 남	31,713	8,002	25.2	10,262	32.4	9,575	30.2
송 파	43,917	11,190	25.5	13,090	29.8	13,090	29.8
강 동	29,201	6,872	23.5	8,882	30.4	8,882	30.4

## '19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추경 예산 교부 (안)

(단위 : 개, 천원)

구 분	대원수 (명)	구매 목표량 (대원수 2% 이상)	보조금 교부액	비 고
<b>합 계</b>	<b>665,596</b>	<b>14,000</b>	<b>294,000</b>	
종 로 구	8,702	200	4,200	
중 구	8,964	200	4,200	
용 산 구	15,496	330	6,930	
성 동 구	21,910	460	9,660	
광 진 구	26,661	560	11,760	
동대문구	24,266	510	10,710	
중 량 구	30,611	640	13,440	
성 북 구	26,646	560	11,760	
강 북 구	21,455	450	9,450	
도 봉 구	21,083	450	9,450	
노 원 구	31,037	650	13,650	
은 평 구	32,394	670	14,070	
서대문구	19,005	400	8,400	
마 포 구	26,055	550	11,550	
양 천 구	26,869	560	11,760	
강 서 구	46,421	950	19,950	
구 로 구	29,508	680	14,280	
금 천 구	18,624	400	8,400	
영등포구	27,572	580	12,180	
동 작 구	28,036	590	12,390	
관 약 구	44,180	910	19,110	
서 초 구	25,270	530	11,130	
강 남 구	31,713	660	13,860	
송 파 구	43,917	900	18,900	
강 동 구	29,201	610	12,810	

## 전국 17개 시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보 현황

(18. 12. 31.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순 위	시도명	대원수(지역)	확보수량	확보율(%)	비 고
<b>평 균</b>				<b>49.9</b>	
1	경 북	141,170	157,490	111.6	
2	전 남	93,384	94,533	101.2	
3	충 북	92,981	70,247	75.5	
4	강 원	72,337	53,462	73.9	
5	충 남	126,853	92,016	72.5	
6	울 산	71,344	41,682	58.4	
7	전 북	95,940	55,650	58.0	
8	경 기	859,319	469,570	54.6	
9	경 남	192,590	100,281	52.1	
10	광 주	88,064	42,044	47.7	
11	제 주	39,788	18,258	45.9	
12	대 구	145,952	59,567	40.8	
13	세 종	20,438	7,762	38.0	
14	인 천	201,952	75,422	37.3	
15	대 전	92,378	31,881	34.5	
16	부 산	211,004	58,148	27.6	
<b>17</b>	<b>서 울</b>	<b>663,154</b>	<b>173,901</b>	<b>26.2</b>	